



주거용 수도서비스의 중단 방침

버논 시 공공기업
4305 S SANTA FE AVE.
VERNON, CALIFORNIA 90058



주거용 수도 서비스의 중단 방침

1. 방침의 적용

이 방침은 버논 공공기업 주거용 수도서비스 계정에 전부 적용되지만, 비 거주용 서비스 계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방침이 버논 공공기업(VPU)의 기타 규칙, 규정, 혹은 방침과 충돌하는 경우, 이 방침으로 관리한다.

2. 청구절차; 미납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청구서에 나온 제시일까지 청구서를 납부해야 한다. 그 후 이십(20)일 내에 VPU 에 요금납부금을 받지 않는 경우(우편소인은 허용안함) 청구서는 체납되고 연체료가 부과된다. 청구서가 최소한 60 일 내에 체납이 되면, VPU 는 공공기업법 10009 항 등과 보건안전법 116900 항에 의거하여 수도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3. 연락처

수도요금에 대한 질문이나 도움, 또는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의논하려면, VPU 의 고객상담원에게 (323) 583-8811 으로 연락한다. 고객은 시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목요일, 아침 7 시부터 저녁 5 시 30 분까지 VPU 고객서비스국 4305 Santa Fe Avenue, Vernon, CA 90058 에 찾아가도 된다.

4. 청구서 분쟁과 항소

청구서에 문제를 제기하는 고객은 고객서비스국 직원에게 재고를 요청해도 된다. 재고에서 고객에게 적당한 기간동안 미납잔액의 할부 상황을 허용하는 여부를 참작하게 될 것이다.

재고 요청으로 고객서비스국 직원이 불리한 판결을 내린 고객은 그러한 판결을 버논 공공기업 부장이 재고하게 할 수도 있다.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해, 고객은 시정부가 주장한 만기될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한 납부금은 이의를 제기한 상황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한 납부금 대신, 고객은 납부금의 분할 상황을 요청할 수도 있다. 분할납부금의 승인은 시정부의 단독 재량에 달려있다. 이의를 제기한 납부금의 수표나 송금액의 다른 형태는 부장에게 해명편지를 동봉해야 한다. 이의를 제기한 납부금과 해명편지를 받고 난 후 부장은 청구액의 근거를 재고하게 된다. 재고한 다음 부장은 (a) 특수한 상황이 존재하면, 부도수표 수수료, 재연결 비용, 혹은 연체료를 면제하거나 (b) 재고하고 내린 판결에 따라 수도요금을 수정할 것을 권한다. 크레딧으로 돌려주거나 환불해주는 권고사항은 시 행정관이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 금액이 \$10,000 이 넘으면, 시의회 승인이 필요하게 된다.

부장이 문제를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못하면, 고객은 최종 판결을 시의회에 청원해도 된다.

5. 납부연장과 기타 납부약정

정상납부기간에 고객이 청구서를 납부할 형편이 안되면, 고객은 납부연장, 할부상환, 혹은 별도납부약정을 요청해도 된다. 납부약정을 허가하는 여부에 대한 시 판결과 제공한

납부약정의 약관은 최종적이고 시의회에 항소하지 못한다. 납부약정이 정해진 동안 고객은 모든 수도서비스 요금을 현상유지해야 한다. 고객이 이 조항에 따라 납부약정을 허가받고 납부일까지 납부약정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시는 수도서비스를 중단할 수도 있다.

6. 의료적 경제적 곤경에 대한 납부약정

다음 조건에 전부 부합하면 시는 고객에게 납부약정을 허가하게 된다.

(a) 수도 공급 중단이 생명에 위협을 주거나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게 되면 고객이나 고객의 세입자는 면허있는 주치의로부터 인증서를 받아 시에 제출한다.

(b) 고객은 시의 정상적인 청구주기에서 주거용 서비스 요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고객의 가족원 중 누구든지 아래에 해당하면 “경제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여겨진다. (a) 고객의 가족원이 캘웍스, 캘프레시, 일반보조금, 메디칼, 보조보장소득/ 주정부 보조금 프로그램, 혹은 여성, 신생아, 아동을 위한 캘리포니아 특수 영양보조 프로그램의 현재 수혜자인 경우, 혹은 (b) 고객은 위증의 처벌하에 연간 가구소득이 연방정부 빈곤 수치의 200% 이하라고 신고한 경우 고객은 시의 정상적인 청구주기에서 주거용 서비스 요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간주된다.

(c) 고객은 체납료에 대해 분할납부약정을 체결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상기 조건에 전부 부합하는 고객에 대해, 시는 납부연장, 할부상환, 혹은 별도납부약정을 제공할 것이다. 시는 가장 적절한 납부약정을 선택하고 그에 대한 약관을 정하게 된다. 시가 정한 납부약정의 약관은 최종적이고 시의회에 항소하지 못한다. 납부약정이 정해진 동안 고객은 모든 수도서비스 요금을 현상유지해야 한다. 고객이 의료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납부약정을 허가받고 납부약정에 따라 납부일로부터 60 일 내에 금액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혹은 60 일동안 현재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시는 수도서비스를 중단할 수도 있다.

7. 기타 구제책이나 위반

수도서비스의 중단에 추가적으로, 시는 수도서비스요금의 미납에 관한 법이나 형평법으로 다음을 포함하나 제한하지 않는 구제책을 추구할 수도 있다: 부동산에 유치권을 신청하여 체납료를 담보로 설정하는 것, 신청이나 법적 소송하는 것, 혹은 수금업체에 미납료를 회부하는 것. 미납이 아닌 경우 시 조례안, 규칙, 규정 위반으로 시는 수도서비스를 중단할 권리가 있다.